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직원 정원 확대 〉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7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경태의원 등 22인
2. 발 의 일: 2024. 6. 24.
3. 회 부 일: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과 공소전담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함. 나아가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이 기관 자료제출,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업무량 폭증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수처의 업무특성상 행정업무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Ⅲ.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 40명 이내의 수사관(제10조제2항) 및 20명 이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제11조)으로 구성됨.

개정안은 검사의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행정직원의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략)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② _____ _____ <u>40</u> 명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② ----- ----- <u>80명</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0</u> 명 이내로 한다.	② _____ <u>50명</u> -----.

현재 공수처 인원은 85명임. 참고로 검찰 정원은 8,453명¹⁾이며 경찰 정원은 131,004명²⁾임.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수는 약 7,100명, 이 중 기소대상자는 약 5,600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후 약 3년간 접수된 총 사건의 수는 8,501건(2024. 4. 30. 기준)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죄를 범한 고위공직자의 수사관여 가능성이 타 범죄에 비해 높아 수사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직원의 경우 ① 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검사정원 대비 검사의 인력 정원이 부족한 점, ②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예산·인사업무 등 기본적인 행정인력 소요가 존재한다는 점, ③ 현재 인력 부족으로 행정직원 정원(20명)보다 많은 수의 파견공무원(22명)이 공수처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직원의 증원 필요성은 있음.

1) 대검찰청, 「2023년 검찰연감」, 2023
2) 경찰청, 「2022년 경찰통계연보」, 2023

<공수처와 검찰청의 검사 정원 대비 검사의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의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의 인력 비율
청주지검	38명	131명	3.45배
창원지검	43명	175명	4.07배
부천시청	43명	142명	3.30배
안양지청	34명	102명	3.00배
천안지청	35명	110명	3.14배
대구서부지청	35명	121명	3.45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453명	3.69배
공수처	25명	60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2.4배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자료 : 2023년 검찰연감

<공수처 중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2024.4.30. 기준)>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행정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7)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파견(행정5)
	과 서무	파견(국가7)
회계	회계·계약(지출원)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공수처는 출범 3년차로 업무모델을 우선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공수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³⁾ 수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집행 역시 부진하므로, 정원 미달 인원 충원 및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3,721	18,302	77.1%	17,683	15,461	87.4%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01-300)	5,793 ¹⁾	5,089	87.8%	1,925	1,916	99.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01-301)	3,375 ²⁾	2,274	67.3%	1,170	1,163	99.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2,363	1,181	49.9%	1,970	1,344	68.2%
공판활동지원 (1012-301)	103	62	60.1%	53	9	17.0%
공수처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7,816	6,384	81.6%	8,161	7,111	87.1%
공수처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718	1,588	92.4%	1,707	1,829	107.1%
공수처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2,553	1,724	67.5%	2,697	2,089	77.5%

* 주 1) 제2회 추경예산 18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00만원을 합한 금액임.

2) 제2회 추경예산 33억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00만원을 합한 금액임.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24. 6.) 기준 검사의 현원은 20명으로 총 5명의 결원이 있고, 수사관의 현원은 36명으로 총 4명의 결원이 있음.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 시 예산상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⁴⁾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1인당 업무량 수준, 향후 예상되는 공수처의 업무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수요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개정안과 관련, 공수처는 현 정원(85명)으로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과 수사 효율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조직기능 수행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경우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1인당 업무량, 업무소요 예측, 예산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

4)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